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80
----------	-----

제출년월일 : 2013. 11.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4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취득**으로 신규매입 4건 17,650㎡ 2,420,687천원, **토지교환**으로 매입 1건 31,240㎡ 57,794천원 처분 1건 33,223㎡ 74,812천원 **건물취득**으로 신축 1건 990㎡ 2,100,000천원, **기타취득**으로 시설물 설치 1건 9,000㎡ 400,000천원임.

가. 토지 취득

- ① 매입: 평창황병산사냥 민속체험관 건립 (문화관광과)
 - 대관령면 차항리 124-1번지 외 3필지 3,864㎡ 499,345천원
- ② 매입: 용평체육공원 조성 (경제체육과)
 - 용평면 장평리 317-7번지 외 7필지 11,098㎡ 1,799,458천원
- ③ 매입: 백덕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산림과)
 - 방림면 운교리 1182-6번지 외 6필지 1,544㎡ 114,735천원
- ④ 매입: 군유림 집단화사업 (산림과)
 - 미탄면 회동리 산29-4번지 외 1필지 1,144㎡ 7,149천원

나. 토지 교환

- ① 매입: 군유림 집단화사업 (산림과)
 - 미탄면 회동리 산31번지 31,240㎡ 57,794천원
- ① 처분: 군유림 집단화사업 (산림과)
 - 봉평면 유포리 산307번지 외 1필지 33,223㎡ 74,812천원

다. 건물 취득

- ① 신축: 평창황병산사냥 민속체험관 건립 (문화관광과)
 - 대관령면 차항리 126-3번지 990㎡ 2,100,000천원

라. 기타 취득

- ① 시설물: 용평체육공원 조성(축구장 등) (경제체육과)
 - 용평면 장평리 317-7번지 외 7필지 9,000㎡ 400,000천원

3. 첨부자료

- 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 1부.
- 나. 사업계획서 각 1부.
- 다. 관계법령 발췌 1부.

2014년 취득·처분 재산목록

(단위 : m², 천원)

연 번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 고 (소유자)
	지목	소 재 지	수량				
토지 취득(4건)			17,650	2,420,687			
매입(4필지)			3,864	499,345			
1	전	대관령면 차항리 124-1	1,007	130,910	2014년	평창황병산사냥 민속체험관 부지	최종성
	전	대관령면 차항리 125	1,277	166,010			최종근
	전	대관령면 차항리 126-3	985	128,050			최종근
	구	대관령면 차항리 588	595	74,375			국(건설교통부)
매입(8필지)			11,098	1,799,458			
2	전	용평면 장평리 317-7	713	124,775	2014년	용평체육공원 조성 부지	김종철
	전	용평면 장평리 317-8	1,117	195,475			신인호외 2
	전	용평면 장평리 328	3,170	554,750			신인호외 2
	대	용평면 장평리 328-1	323	61,370			신인호외 2
	전	용평면 장평리 325	1,285	218,450			곽복진
	전	용평면 장평리 317-6	1,669	287,068			김춘자의외 7
	전	용평면 장평리 317-4	1,296	220,320			김종철
	답	용평면 장평리 324	1,525	137,250			최옥순외 1
매입(7필지)			1,544	114,735			
3	대	방림면 운교리 1182-6	316	28,440	2014년	백덕산등산로조성 부지 (제1주차장_운교삼거리)	김경자
	대	방림면 운교리 1184	172	15,480			김경자
	대	방림면 운교리 1185	172	15,480			김경자
	대	방림면 운교리 1186	205	18,450			김경자
	대	방림면 운교리 1187-1	144	12,960			김경자
	대	방림면 운교리 1187-2	110	9,900			박창순
	전	방림면 운교리 741-2	425	14,025		(제2주차장_떡골)	곽달규
매입(2필지)			1,144	7,149			
4	임	미탄면 회동리 산29-4	766	4,673	2014년	군유림 집단화사업	이용배외1명
	임	미탄면 회동리 산29-5	378	2,476			이용배외1명
토지 교환(1)							
매입(1필지)			31,240	57,794			
1	임	미탄면 회동리 산31	31,240	57,794	2014년	군유림 집단화사업	이대복
	처분(2필지)			33,223	74,812		
	임	봉평면 유포리 산307	19,339	43,513	2014년	군유림 집단화사업	평창군
임	봉평면 유포리 산308	13,884	31,299				

연 번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 고 (소유자)
	지목	소 재 지	수량				
건물 취득(1건)			990	2,100,000			
1	건물	대관령면 차항리 126-3	990	2,100,000	2014~ 2015년	평창황병산사냥 민속체험관	평창군
기타 취득(1건)			9,000	400,000			
1	시설물	용평면 장평리 317-7번지 외 7	9,000	400,000	2014년	용평체육공원조성 축구장등	평창군

-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문화신프라 구축 -
황병산사냥민속 체험관 건립계획

- 2007년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된 「평창황병산사냥민속」의 체계적 전승보존을 위한 전수 공간 확보
- 사냥민속의 전통도구인 설피, 전통스키, 주루목, 사냥 창 등의 제작 과정 등을 동계올림픽 문화관광콘텐츠 육성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문화올림픽 자원으로 활용

□ 사업개요

- 공 사 명 : 평창황병산사냥민속 체험관 건립
- 위 치 :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26-3번지 외 3필지
- 사업기간 : 2014년 ~ 2015년(2년)
- 사 업 량 : 체험관 1동(지상 2층) 부지 3,864㎡, 건물연면적 990㎡
- 전수관(330㎡), 체험 및 전수공예관(470㎡), 박물관(190㎡),
- 사 업 비 : 2,600백만원(도비 840, 군비 1,760) *부지매입 5억 포함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전수회관 건립 강원도 예산확보 요청 건의접수 : 2007. 5.
- 황병산사냥민속 체험마을 사업계획서 접수 : 2008. 2.
- 2010 무형문화재 전수지원 사업계획서 강원도 제출 : 2009. 4.
- 황병산사냥민속 전수회관 및 전통공예관 건립계획 접수 : 2011. 9.
- 황병산사냥민속 전수회관 및 전통공예관 건립계획서 강원도 제출 : 2011. 10.
- 2013 문화재청 소관 국고보조사업 신청 : 2012. 5.
- 2014 사업비 반영 강원도 문화예술과 방문 건의 : 2013. 3.

▶ 그동안 수차례에 거쳐 사업건의를 받아왔으며, 강원도 및 문화재청에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르게 됨.

□ 연차별 투자계획 (총 2,6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14년	'15년
계	2,600	1,500	1,100
도비	840	400	440
군비	1,760	1,100	660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산출기초		금액
총계			2,600
공	소계		1,931
사	건축공사	○ 건축공사 990㎡×1,500,000원 = 1,485백만원 ○ 기계, 소방공사 990㎡×200,000원 = 198백만원 ○ 전기설비공사 990㎡×150,000원 = 149백만원 ○ 통신설비공사 990㎡×100,000원 = 99백만원	1,931
비	소계		500
보	-	○ 부지매입비 3,864㎡×129,500원 ----- 500백만원	500
상	소계		169
비	설계비	○ 설계비 ----- 114백만원	169
용	감리비	○ 감리비 ----- 55백만원	
역			
비			

□ 부지확보 계획

- 부지 현황

구분	계		국유지		사유지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평창황병산사냥민속 체험관 건립	4	3,864	1	595	3	3,269	

- 부지매입 : 500백만원
 - 토지매입비 : 500백만원 (4필지 3,864㎡)

□ 추진계획

- 군정조정위원회(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등

□ 위치도



『용평 체육공원 조성』 추진계획

- 용평면은 교통의 중심지이며 평창의 관문으로써 체육공원 없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 각종 행사와 대회유치 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2018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홍보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사업현황

- 위 치 :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17-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부지면적 : 20,166㎡(경제체육과 매입 11,098㎡ 문화관광과 매입 9,068㎡)
- 사 업 비 : 2,199,458천원(부지 1,799,458천원, 시설비 400,000천원)
 - 부지매입 : 용평면 장평리 317-7외 7필지 11,098㎡, 1,799,458천원
 - 시설물(축구장 1면) : 400,000천원
- ※ 현재 용도지구 :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소류(폭 8M~10M), 소로(폭 8M 미만)

□ 추진상황

-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 사업부지[(구)전경대 부지]의 녹지용지 해제에 따른 대체 녹지용지 취득
 - 장평리 317-2번지 외 1필지(9,068㎡)
-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문화관광과, 2013. 6. 17.)

□ 추진계획

- 사업예정부지 도시계획 변경 협의 : 문화관광과, 도시주택과
 - 도시계획 도로선 변경
 - 녹지지역 허용용도 : 농업용 가건물만 가능(현재) ⇒ 체육시설 가능(변경)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부지매입, 농지전용 등 절차 이행 후 추진
- 2014년 당초예산 편성

□ 위치도



백덕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계획

- 백덕산 등산로 하산길(운교1리 운교삼거리, 운교2리 먹골)에 등산객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여 관광편의 제공 및 농산물 판매를 위한 다목적 공간 활용하여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 방림면사무소-10015(2013.10.04.)호 관련

□ 백덕산 등산객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2012년			2013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백덕산 등산객수	11,950	617	401	1,132	5,312	3,705	783

※ 백덕산 등산로는 겨울산행지로 2013년 1월 5,312명, 2013년 1월 20일 1,227명의 등산객이 방문하였음. (자동인원계수대 참조)

□ 사업개요

- 공 사 명 : 백덕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공사
- 위 치 : 방림면 운교1리(운교삼거리), 운교2리(먹골)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9월
- 사 업 량 : 주차시설 2개소, 3,453㎡
- 사 업 비: 1,091,135천원(교부세 400,000, 군비 691,135)
 - 운교 1리(운교삼거리) 주차장 조성 사업비 : 477,110천원(1,164㎡)
 - 토지 및 건물매입비 : 150,710천원
 - 주차장사업비(설계비, 화장실, 영농손실보사금등 포함) : 326,400천원
 - 운교 2리(먹골) 주차장 조성 사업비 : 614,025천원(2,289㎡)
 - 토지매입비 : 14,025천원
 - 주차장사업비(설계비, 화장실, 영농손실보사금등 포함) : 600,000천원

□ 부지확보 계획

- 주차장 부지현황 : 11필지 3,453m²

구분	계		국유지		사유지		비고
	필지	면적(m ²)	필지	면적(m ²)	필지	면적(m ²)	
계	11	3,453	4	1,909	7	1,544	
1주차장(운교삼거리)	7	1,164	1	45	6	1,119	
2주차장(떡골)	4	2,289	3	1,864	1	425	

- 부지매입 : 7필지 114,735천원
 - 1주차장(운교삼거리) : 6필지 1,119m² 100,710천원
 - 2주차장(떡골) : 1필지 425m² 14,025천원
- 지장물(건물) 보상 : 1동 50,000천원 ※관리계획 제외
- 주차장 부지 중 국유지는 관련부서와 협의 중

□ 추진계획

- 군정조정위원회(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13. 10.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 2013. 11.
- 매입절차 이행 : 2014. 1. ~ 2.
 - 감정평가 : 감정평가기관 2개소 이상의 감정결과에 따라 매입금액 산정
- 예산확보 대책
 - 2013.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30,000천원 반영
 - 2014년 당초예산 반영

□ 기대효과

- 부족한 주차시설확대로 등산객 편의 제공 및 농산물판매로 지역소득증대
-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군으로 이미지 관리에 기여

□ 위치도



-미탄면 회동리 일원에 대한-
군유림집단화(교환·취득)관리계획

《 조 성 개 요 》

○ 군유림과 연결되어 있는 사유지와 분산되어 있는 군유림을 교환하여 집단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비용절감 등 지역개발 여건 마련으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함

□ **현 황**

- 위 치 :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산88번지 외 6필지(용수골)
- 규 모 : 626,929㎡(≒18만평)

□ **집단화 사업대상지**

위 치		지적 (㎡)	대상 면적 (㎡)	용도 지역	소 유 자		비고	
면	리				지번	주 소		성명
합계		7필지	626,929	626,929				
미 탄	회 동	산29-4	766	766	관리	경기 과주시 조리읍 대원로 45-506호	이용배외1	사유지
		산29-5	378	378	관리	"	"	사유지
		산31	31,240	31,240	관리	경기 하남시 덕풍동 한솔리치빌 502동 1603	이대복	사유지
		산32	52,364	52,364	보전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	평창군	군유림
		산33	82,314	82,314	보전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	평창군	"
		산32	32,727	32,727	보전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	평창군	"
		산88	427,140	427,140	보전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	평창군	"

□ 교환 및 취득 대상지 토지현황

가. 신규매입 토지(사유지)

위 치			지적 (m ²)	매수면적 (m ²)	용도 지역	소 유 자	
면	리	지번				주 소	성명
합계		2필지	1,144	1,144			
미탄	회동	산29-4	766	766	관리	경기 과천시 조리읍 대원로 45-506	이용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이파크 104동 1004호	이규방
		산29-5	378	378	관리	상동	상동

나. 교환 토지

위 치			지적 (m ²)	교환면적 (m ²)	용도 지역	소 유 자	
면	리	지번				주 소	성명
교환(매입) 1필지				31,240			
미탄	회동	산31	31,240	31,240	관리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한솔리치빌 502동 1603	이대복
교환(처분) 2필지				33,223			
봉평	유포	산307	19,339	19,339	관리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	평창군
		산308	13,884	13,884	관리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	평창군

다. 대상지 감정평가금액

위 치			지적 (m ²)	교환면적 (m ²)	(주)하나감정	(주)대한감정	평가액	비고 (단가/m)
면	리	지번						
신규매입 2필지							7,148,500	
미탄	회동	산29-4	766	766	4,749,200	4,596,000	4,672,600	6,100
		산29-5	378	378	2,494,800	2,457,000	2,475,900	6,550
교환매입 1필지							57,794,000	
미탄	회동	산31	31,240	31,240	59,356,000	56,232,000	57,794,000	1,850
교환매각 2필지							74,751,750	
봉평	유포	산307	19,339	19,339	44,479,700	42,545,800	43,512,750	2,250
		산308	13,884	13,884	31,933,200	30,544,800	31,239,000	2,250

□ 그간 추진상황

- 대상지조사 : 2013. 3.
- 토지감정 : 2013. 6. 25
- 관련소유자와 협의진행 : 2013. 3.
- 집단화 추진계획수립 : 2013. 7.

□ 집단화대상지 현황도

【 신규 매입 및 교환 매입토지 】



※ 사방댐 설치지 (군유림 ○, 사유림 ○)

【 교환 처분토지 】



관계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